

# 審 查 報 告 書

2002. 1. 18

총 무 위 원 회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2. 1. 8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2. 1. 10
- 라. 上程日字 : 2002. 1. 18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文哲柱)

### 가. 提案理由

- 석유사업법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징수조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 공연법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연장업 민원사무명을 수정하며,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 보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 수수료 요율 4종목 신설 및 사문화된 수수료 요율 6종목 삭제.
-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된 수수료명 2종목 수정.
-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요율 2종목 신설.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수수료 징수 근거가 모법인 석유사업법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을 개정, 수수료 징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있어 그에따라 관련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 공연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관련 민원사무명의 수정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지만 모법인 석유사업법이 2000. 1. 28 개정되었음에도 2년여가 지나서 뒤늦게 조치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小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43호
의결 년월일	2002. . . (제 회)

##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2002. 1. 8.

# 서산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	-----

제출년월일 : 2002. 1. 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석유사업법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징수조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 공연법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연장업 민원사무명을 수정하며,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무인민원발급기운영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 신설(안 제5조제2항)
- 나.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음반·비디오물유통 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 수수료 요율 4종목 신설 및 사문화된 수수료 요율 6종목 삭제(별표1)
- 다. 공연법 개정에 따른 공연장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된 수수료명 2종목 수정(별표1)
- 라.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등록신청 수수료 요율 2종목 신설(별표1)

##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
- 공연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 석유사업법제31조제1항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 나. 입법예고 결과의견

- 예고기간 : 2001. 11. 23 ~ 2001. 12. 12(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제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수수료명중(인가, 허가, 등록, 지정, 확인등)란 중 8호의 문화공보관계를 다음과 같이 하고, 9호를 10호로 하며 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수 료 명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8. 문화공보관계			
가. 종합유원지시설업 신규허가	1건	50,000원	
나. 종합유원지시설업 변경허가	1건	25,000원	
다. 공연장업신규등록	1건	10,000원	
라. 공연장업변경등록	1건	2,000원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1) 신규등록	1건	20,000원	
(2) 변경등록	1건	5,000원	
바. 복합유통·제공업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2)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9. 지역경제관계			
가. 석유판매업소(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나. 석유판매업소(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원	
10. 기타			
가. 기타 인·허가, 신고, 등록, 확인 등으로 개별 법 수수료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것	1건	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징수방법) (생략)</p> <p>(신설)</p>	<p>제5조(징수방법)①(현행과 같음)</p> <p>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p>

# 제증명수수료요일표 신.구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수료명	기준	요금	수수료명	기준	요금
(증명) 1~6(생략)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7(생략)			(증명) 1~6(현행과 같음)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7(현행과 같음)		
8. 문화공보관계			8. 문화공보관계		
가. 컴퓨터계임장업, 기타 유기장업 신규허가(신고)	1건	30,000원	가. 종합유원지시설업 신규허가	1건	50,000원
나. 컴퓨터계임장업, 기타유기장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원	나. 종합유원지시설업 변경허가	1건	25,000원
다. 종합유원지시설업 신규허가	1건	50,000원	다. 공연장업 신규등록	1건	10,000원
라. 종합유원지시설업 변경허가	1건	25,000원	라.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2,000원
마.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 장업, 노래연습장업		
바.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000원	(1) 신규등록	1건	20,000원
사.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1건	1,000원	(2) 변경등록	1건	5,000원
아.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바. 복합유통·재공업		
자. 출판사, 인쇄소 등록	1건	3,000원	(1) 신규등록·신고	1건	20,000원
차.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	1건	2,000원	(2)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9. 기타			9. 지역경제관계		
가. 기타,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확인 등으로 개별법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것	1건	500원	가. 석유판매업소(주유소)등록	1건	20,000원
			나. 석유판매업소(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원
			10. 기타		
			가. 기타,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확인 등으로 개별법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것	1건	500원